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2. 7. 4.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 ②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결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7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가.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내역
 - ① ‘아동·청소년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여부(소극)
 - ② 기본 형량범위 하한을 법정형의 하한 이상으로 상향 여부(소극)
 - ③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양형인자 적용범위를 제한할지 여부(소극)
 - ④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소극)
 - 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의 양형인자 명칭 및 정의규정을 수정할지 여부(소극)
 - ⑥ 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규정에 예시 추가 여부(소극)
 - ⑦ ‘윤간’의 양형인자 명칭을 ‘집단 범행’으로 수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소극)

- ⑧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에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추가할지 여부(소극)
- ⑨ 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할지 여부 및 명칭 수정 여부(소극)
- ⑩ 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삭제할지 여부(소극)
- ⑪ 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명칭을 ‘인적 신뢰지위 이용’으로 수정하고, 예시를 추가할지 여부(소극)
- ⑫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소극)
- ⑬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의 삭제 등 여부(소극)
- ⑭ 집행유예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의 삭제 여부(소극)
- ⑮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의 존치 여부(소극)
- ⑯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의 삭제 여부(소극)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2. 5. 2.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 또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에 대한 심의·의결

- ① 명백한 오기 등 수정[유형의 정의에 누락된 ‘강간 등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추가]

다.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심의·의결

- 1) 동종 누범 및 동종 전과(특별·일반가중인자)의 동종 범위 확대 여부
 - 위 양형인자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 동종 누범 및 동종 전과에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를 포함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2)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의 정의규정 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삭제 여부
 - 위 괄호 문구는 삭제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

수정 양형기준

- [정의규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3) ‘진지한 반성’의 삭제 및 정의규정 예시 제시 등 여부
 - 위 양형인자는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2. 5. 2.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함

- 4)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2차 피해 야기’로 확대 등 여부
 - 위 양형인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

수정 양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정의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라. 수정 양형기준 시행 시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2. 10. 1.로 정하여, 2022. 10.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5.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결

- ① 검토 배경, ② 안건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 ③ 기록물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 ④ 소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⑤ 전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6. 다음 회의(제118차 회의) 일정

- 일시: 2022. 8. 16.(화) 오후
- 안건 : 관세법위반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중 설정범위와 유형분류